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4. 8(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3. 4. 16(화)
- 다. 상정일자 : 2013. 4. 16(화) 제1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문화관광과장)

-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설립된 (재)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두장)

-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증진과 문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평창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2012.11.2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허가“를 득한후 11.30일 설립등기와 동시에 이사회를 구성 하였으며 2013. 1. 29일 1억원의 기부금과 3.13일 1천만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습니다.

⇒ 재단의 설립절차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출연금,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권장사업중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의 대부분이 평창군 출연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재단의 설립근거인 조례제정 후 재단설립을 해야하나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재단설립이 선행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토과정에서 일부 민법 제32조가 재단설립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민법 제32조는 재단법인 허가절차 법령일 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주변상황을 보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중에 있고 1995.5.15일 강릉시도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2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여 2018평창동계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내용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서둘러 설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성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부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활동 보급 사업

2.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전통문화계승 발굴·육성 사업
3.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사업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군에서 위탁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 된다.
-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되어 이사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군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승계한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조례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p>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활동 보급 사업 2.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문화 계승 발굴·육성 사업 3.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사업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군에서 위탁한 사업 <p>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p>제5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 된다.</p> <p>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p>	<p>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활동 보급 사업 2.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문화 계승 발굴·육성 사업 3.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유산 계승 발전 사업 6.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8.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군에서 위탁한 사업 <p>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p>제6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 된다.</p> <p>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p>
---	---

<p>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에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p> <p>제7조(이사회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p> <p>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p> <p>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p> <p>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p>	<p>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p> <p>제8조(이사회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p> <p>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p> <p>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p> <p>제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p>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p>
---	--

<p>거나 해임한다.</p> <p>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균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균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하거나 해임한다.</p> <p>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3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도 또는 군이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균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균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	--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승계한다.

